

영등포구의회
제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2016. 3. 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9호로 2016년 2월 16일 정선희 의원 외 6명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집회일을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회기 운영 및 효율적인 행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조정(안 제3조제2항)
-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 폐쇄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다음연도 2월 ⇨ 당해연도 12월) 결산서 작성, 결산서 의회제출, 결산 승인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어, 결산을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정을 조정 하려는 것임.
- 결산 승인은 세입·세출예산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점검 하고 재정효과와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으로 출납 폐쇄일을 기점으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출납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 앞당겨짐에 따른 1차 정례회의 일자조정(7월⇨6월)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구 분	일 정		근 거
	변경 전	변경 후	
출납폐쇄	다음연도 2월	당해연도 12월	지방재정법 제8조
결산서 작성	5월 19일	3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지방의회 제출	6월말	5월 10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제1항
지방의회 승인	6월~7월	6월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제1항

- 또한,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 72%인 18개구에서 1차 정례회를 6월에 개최하고 있으며, 2017.1.1.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서는 매년 5월·6월에 1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따라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한 일정조정은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8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 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3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③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일 : 2017.1.1.> 제54조제1항